

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 현 찬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힘써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. 안녕하십니까? 행정자치위원회 김 재 형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
-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」에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서 위임된 사항 중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.

- 주요 내용으로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감염병 검사시 공가로 처리하도록 관련 근거를 명시화하고 원격지(遠隔地)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공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.

-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 현 찬 위원장님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명확한 규정에 의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